

제 844 호
1981. 6. 27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1518 호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 3
제 1519 호:	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4
제 1520 호:	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5
◎ 고 시	
제 225 호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19
제 226 호:	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지구) 지적승인 19
제 227 호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20
제 228 호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21
제 229 호:	도시계획사업 (학교, 도로) 시행자명의변경승인 22
제 230 호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일부변경 22
제 231 호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23
제 232 호:	주택개량을위한채개발사업관리차분계획인가 24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38

제 233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고시	24
제 23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6
제 23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6
제 236 호 :	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및지적승인	27
제 23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8
제 238 호 :	LPG 자동차 충전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	28
제 239 호 :	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결정및지적승인	30
제 240 호 :	광화문구역, 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인가	30

㉠ 공 고

제 170 호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	31
제 171 호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	31
제 172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32
제 173 호 :	도시공원접용허가	32
제 174 호 :	동철사위치변경공고	32
제 38 호 (강동구공고)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	33

㉡ 사 령

조 계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6.1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인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18 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(이하 ' 공무원 ' 이라 한다)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제 2 조 (책임완수) 공무원은 수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.

제 3 조 (당직근무) ① 후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에 화재, 도난, 기타사고의

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 (이하 ' 당직근무자 ' 라 한다) 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.

② 전항 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.

제 4 조 (파견근무) ①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 27 조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.

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.

제 2 장 근무시간

제 5 조 (근무시간)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. 다만, 토요일의 총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.

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.

제 6 조 (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)

교육감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 7 조 (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)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결 칙

제 8 조 (점지허가)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교육구청의 4 급이하의 교육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
제 9 조 (준용)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공무원 복무규정중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65 조는 지방공무원법 제 57 조로 한다.

제 10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81.6.15)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
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틀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圖
1981년 6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19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중 "서울특별시가 설치하는 지하철운수사업의 운영"을 "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지하철건설사업과 지하철운영사업"으로 한다.

제 2 조중 "지하철 여객운송사업"을 "지하철건설사업(이하 "건설사업"이라 한다)과 지하철운수사업(이하 "운영사업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 3 조제 2 항중 "지하철본부장"을 "지하철건설본부장"로 한다.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특별회계의 설치등) ①제 2 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

<p>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건설사업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대금, 일반회계전입금, 국고보조금, 차관, 기타 건설사업에 부대되어 발생하는 재수입으로 하고 운영사업의 재원은 운수수입 임대수입, 차관, 기타 운영사업에 부대되어 발생하는 재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③관리자는 결산 기타 회계의 총괄을 위하여 건설사업의 수입금과 운영사업의 수입금을 상호 충당할 수 있다.</p> <p>④제 3항의 충당은 이를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각각 거래은행에 이를 통지하여 수입금일제표(세출월제표를 포함한다)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 20조를 제 21조로 하고 제 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20조 (권한의 위임) 별제 9조 규정의 관리자의 업무중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지하철운영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</p>	<p>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규정) 이조례 시행당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.</p> <p>③(자본금) 이조례 시행전까지 건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차관,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사업의 부채로 정한다. 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은 출자로 한다.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27일</p> <p>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2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조례는 건축법(이</p>
--	--

<p>하 '법'이라 한다) 및 법시행령 (이하 '령'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적용범위)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, 재개발지구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 2 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</p> <p>제 3 조 (용도제한) 풍치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의 별표 2 (영 제 142 조 제 2 항관련)에 제기하는 건축물 2. 공장 3. 창고시설 4. 운수시설 5. 교정시설 6. 영부표 제 4 항 (근민생활시설) 중 제 4 호 (동물농장에 한함)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.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, 철물상, 풍구상 8. 저탄장, 야적장, 제재소, 목재판매 	<p>소, 전제상</p> <p>제 4 조 (건폐율 및 형질변경등)</p> <p>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 이하로 한다.</p> <p>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 5 조 (용적율)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90%로 한다.</p> <p>제 6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 평방미터로 한다. 다만,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 평방미터로 한다.</p> <p>제 7 조 (건축물의 높이)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8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</p>
--	---

제 8 조 (대지안의 공지) 풍치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 (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) 으로부터 다 음표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 여야 한다.

비 고	건축선으로 부터의 거리 (미터)	양측면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 (미터)	후면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 (미터)
1층건축물	2.5	1.5	1.5
2층이상건축물	2.5	1.5	2.0

제 9 조 (건축물의 규모등) 풍치지구 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영 제 180 조제 4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제 10 조 (학교 건축물에 대한 적용 료례) ① 풍치지구내에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 (전문 대학 이상은 기존학교에 한함) 로서 주위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서울특별시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5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%까지, 높이는 5층 (20미터 이하로 한다) 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3층이상 각층의 바닥면적은 2,000평방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.

제 3 장 미관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 11 조 (지구의 세분) 도시계획법

시행령 제 16 조의 2 의 규정에 의 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 각호 와 같다.

1. 제 1 종 미관지구
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 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2. 제 2 종 미관지구
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한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3. 제 3 종 미관지구
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
4. 제 4 종 미관지구
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 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 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5. 제 5 종 미관지구
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그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
제 12 조 (건축심의) 시장은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 (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의장의 변경을 포함한다) 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13 조 (건축심의건의 협의) ① 미관지구로서 학교정화구역, 군사시설 보호구역, 문화재보호구역등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할 수 있다.

② 건축허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할 시장 산하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은 미리 세부기준 (지침) 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주관 기관에 통보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용도제한) ①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농수산물 도매시장, 육외점포가 있는 시장
2. 철물 기타 폐품류취급 고물상, 철물점, 공구상
3. 전염병원, 정신병원, 마약진료소, 장의사 및 동물병원, 다만, 종합 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.
4. 자동차 관련시설
다만, 적용공업지역,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5. 연탄공장, 처단장, 야적장
6. 제재소, 목재판매소, 목공소, 건제상
7. 양곡가공업소 (제과점 제외), 식품가공공장, 석재가공공장
8. 창고
9. 세탁소 (직접 세탁하지 아니하는 것 제외)
10. 작업소
11. 징역점
12. 공장
13. 단독주택 (공관 제외), 공동주택
다만,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은 제외한다.

②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2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다만, 전용공업지역, 공업지역 및

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제 3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11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④제 4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10 호 및 제 12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
다만, 제 4 호중 세차장, 영업용차고, 자동차정류장 및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계획에 따른 자동차부속상은 제외한다.

2. 위락시설

3. 관립집회시설 (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,500 평방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)

4. 전개 및 오물처리장

5. 동물 관련시설

⑤제 5 종 미관지구내에서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11 호(제 4 호의 경우에 세차장을 제외한다)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제 15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미관

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.

- 1. 제 1 종미관지구 : 660 평방미터
- 2. 제 2 종미관지구 : 330 평방미터
- 3. 제 3 종미관지구 : 330 평방미터
- 4. 제 4 종미관지구 : 200 평방미터
- 5. 제 5 종미관지구 : 250 평방미터

제 16 조 (건축물의 높이) ①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높이로 한다.

다만, 시장은 영 제 180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(이 경우 제 1 종 미관지구에서는 5 층이하, 제 2 종내지 제 5 종 미관지구에서는 3 층 이하로 함) 와 아파트 건축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 1 종미관지구 : 5 층이상
- 2. 제 2 종미관지구 : 3 층이상
- 3. 제 3 종미관지구 : 1 층이상
- 4. 제 4 종미관지구 : 2 - 4 층범위내
- 5. 제 5 종미관지구 : 2 층이상

②학교, 교회, 극장, 영화관, 파출소, 동사무소, 우체국, 체육관, 집회장,

한림장, 주유소, 기념관, 공장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은 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1항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③ 제 1종내지 제 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유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.

④ "ㄱ"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

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.

⑤ 제 1종내지 제 3종 미관지구로서 땅해 도로면변이 도로보다 삼백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 그 도로에서의 권당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17 조 (대지안의 공지) ① 미관지구내 건축물(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)은 미관도로의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(미 터)	후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의 거리 (미 터)
제 1 종 미관지구	3.0	1.0
제 2 종 미관지구	3.0	1.0
제 3 종 미관지구	3.0	1.5
제 4 종 미관지구	3.0	1.5
제 5 종 미관지구	3.0	1.5
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변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, 출입의 용이 및 자유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, 재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8 조 (건축물의 규모) ①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)은 다음표에 기재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제 16 조 제 2항에 규정된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, 도로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건축물의 앞면길이 (미터)	건축물의 옆면길이 (미터)
제 1 종미관지구	18	9
제 2 종미관지구	12	6
제 3 종미관지구	15	9
제 4 종미관지구	-	-
제 5 종미관지구	12	6

③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

이어야 한다. 다만, 단독주택, 영 제 18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층의 수	건축면적 (평방미터)
3 층	150
4 - 5 층	200
6 - 10 층	330
11 - 15 층	500
16 층 이상	800

제 19 조 (부속건축물의 규모)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경계선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20 조 (건축물의 모양) ①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, 구조,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, 정사각형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서

리 부분의 내각은 각각 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.

③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층에는 계단실, 기계실,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.

④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옥탑의 외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외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1 조 (건축물의 부수시설등) ①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, 전조대, 장독대,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②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,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,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

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미관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 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도시미관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도 변경, 수선, 도장,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적용에의 제외) ①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로서 대수선 및 외장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제 15 조 내지 제 1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시장은 타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법제 4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 지역내의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경우

2. 군사시설보호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파 협의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

<p>적합한 경우</p> <p>3. 전기시설비기술기준령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경우</p> <p>4. 제 7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경우</p> <p>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</p> <p>제 23 조 (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) 최저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</p>	<p>한다.</p> <p>1. 건폐율: 10 분의 3 이상</p> <p>2. 대지면적의 최소한도: 600 평방미터 이상</p> <p>제 24 조 (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) ①최고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. 다만 15층 이상 건축물의 건폐율은 당해 용적율 최대치를 층수로 나눈 수치로 하되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상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
<p>구 분</p> <p>건 폐 율</p> <p>용 적 율</p>	<p>일반 건축물</p> <p>10 분의 4.5 이하</p> <p>670 퍼센트 이하</p>	<p>학교 이적지내 건축물</p> <p>3 분의 1 이하</p> <p>주거지역 200 퍼센트 이하</p> <p>상업지역 600 퍼센트 이하</p>
<p>제 5 장 교육및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</p> <p>제 25 조 (용도제한) 교육 및 연구 지구내에서는 영제 147 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제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공 장</p> <p>2.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</p> <p>3. 교정시설</p> <p>4. 영부표 제 4 항 (근린생활시설)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</p>	<p>하는 건축물</p> <p>5. 일반업무시설</p> <p>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</p> <p>제 26 조 (용도제한) 업무지구내에서는 영제 14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제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공 장</p> <p>2. 교정시설</p> <p>3.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</p>	

4. 동불 관련시설

제 27 조 (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)
 영 제 14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
 하여 시장이 업무환경의 정화를
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
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
 서는 제 26 조에 제기한 건축물과
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
 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
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노유자시설, 기숙사
2. 관광휴게시설

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8 조 (전폐율) 공지지구내에 건
 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다음
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
 수 없다.

1. 제 1 종 공지지구 : 10 분의 2
2. 제 2 종 공지지구 : 10 분의 3
3. 제 3 종 공지지구 : 10 분의 4

제 29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공
 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
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
 한다.

1. 제 1 종 공지지구 : 600 평방미터
2. 제 2 종 공지지구 : 406 평방미터
3. 제 3 종 공지지구 : 330 평방미터

제 30 조 (용적율) 공지지구내에 건축
 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
 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
 없다.

1. 제 1 종 공지지구 : 60 %
2. 제 2 종 공지지구 : 90 %
3. 제 3 종 공지지구 : 120 %

제 31 조 (대지안의 공지) 공지지구내
 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
 (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
 외한다.) 으로 부터 다음표에 제기
 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
 한다.

구 분	건축선으로 부터 의 거리 (미터)	측면 대지 경계 선으로 부터의 거리 (미터)	후면 대지 경계 선으로 부터의 거리 (미터)
제 1 종 공지 지구	6	2	4
제 2 종 공지 지구	4	1.5	3
제 3 종 공지 지구	3	1	2

제 8 장 공한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32 조 (용도제한) 공한지구내에서는 영 제 15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에 제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- 1. 발전소, 제련소, 요업공장, 화학공장,
- 2. 묘지 관련시설

제 9 장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33 조 (용도제한)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- 1.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, 임업,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
- 2.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
- 3. 농업, 임업, 축산업,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
- 4.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
- 5. 수족관, 동물원, 식물원
- 6. 근린 공공시설
- 7. 일용품소매점, 이용원, 미용원, 약국, 의원, 간이음식점, 공중목욕장 기타 유사한 근린 생활시설

제 10 장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제한

제 34 조 (건축제한)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지역 및 지구구분세 관계

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- 1.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 수위가 10.5 미터일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보다 1 미터 이상 높고 재해위험구역외로 부터 당해대지까지의 통행에 장애가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
- 2. 자동차 관련시설
- 3. 동물 관련시설
- 4. 운동시설
- 5.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사용하려는 준치기간 6 개월 이내 가설건축물

제 35 조 (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의 구조)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은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다만,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6 조 (부적합한 기존건물에 대한 조치)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,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<p>· 제 11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 37 조 (벽면의 위치) 영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12 미터 이상의 주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 (기둥포함) 을 건축선으로 부터 1.5 미터 이상 후퇴하여 제 17 조 제 2 항의 경구와 같이 공공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8 조 (담장의 구조등) 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,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</p>	<p>의 벽면, 담장 및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제 12 장 대지내의 조경 제 39 조 (대지내의 조경) ① 영 제 168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조경면적에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소요수량의 50 퍼센트는 높이 3 미터 이상 흉고직경 5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
<p>구 분</p>	<p>식재밀도 (평방미터당)</p>
<p>교 목 (키가 큰 목질성식물)</p>	<p>0.3 본 이상 (낙엽활엽수 50 퍼센트 이상)</p>
<p>관 목 (키가 낮고 줄기가 가는 목본식물)</p>	<p>0.5 본 이상</p>
<p>②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 특성상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수종, 수량 및 방법등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 40 조 (공사기기 및 예치) ① 조</p>	<p>경공사중 식재공사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 (7-8월) 나, 동절기 (12-2월) 를 피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영 제 168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</p>

여야 할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(1급이상)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
③영 제 168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치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
제 41 조 (조경기준 강화) 시장은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의 학교건축 제한을 완화한 경우 및 양호한 임상을 훼손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훼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기준보다 강화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 13 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

제 42 조 (기준미달대지내의 건축완화) 법 제 53 조의 7 제 2 항 및 영 제 180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완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폐율: 당해지역,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

2. 용적율

가. 당해지역 지구의 계획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인

경우: 당해 용적율의 2배이하

나.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 초과하는

경우: 당해 용적율에 당해 대지면적 최소한도 면적을 허가 신청 면적으로 나눈값을 곱한 비율이하

3. 대지면적의 최소한도: 45평방미터이상으로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 이상

4. 대지안의 공지: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.5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, 지구 이격기준의 2분의 1 이상

제 43 조 (미관지구내의 적용특례)

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 17 조 및 제 1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규모 제한으로 건축제한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경우 대지안의 동지는 인접건축물의

건축선으로 부터 후퇴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44 조 (기능상 부득이한 중축등)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, 설비등은 제 42 조 및 제 4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중건 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.

제 14 장 건축위원회

제 45 조 (구성) ①건축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부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제 2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축국장이 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

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6 조 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

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사무보조는 건축지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47 조 (자료제출의 요구등)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 48 조 (회의록, 수당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49 조 (비밀준수) 위원회의 위원,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(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받고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)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(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고 시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25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 (81.3.27) 로 시설결정고시된 성동구관내모전동 2-3 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2 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6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지적승인조서

구 분	도로류별	폭 원	연 장 기	점	층	점	비 고
신 설	소로 1류	10미터	260미터	모전동산 2-3	모전동산 2-3		

나. 결정도면: 별첨 (생략)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26 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438 호 (80.12.31) 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고시된 성동구관내자양동 41 부락 - 자양동 109 부락의 도로변에 대하여 도시계획

- 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6.22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지구) 변경지적승인조서

구분	종별	연장	면적	위치	비고
기정	3종	24,600미터	590,400㎡	강변도로 (양측 12미터)	백지
변경	"	23,300	559,200	" (자양동지내)	1,300미터 축소
"	4종	1,500	22,900	자양동 21부덕-109부덕	북측 15미터

나. 결정도면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227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60 호 (76.10.5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첨비과에 비치한다.

1981. 6.24

서울특별시 장

가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3-5의 9번지

나) 사업의종류 및 명칭

0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0 명칭 :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

다) 사업의규모 (증축시설계획)

구분	용도	구조	증축면적	비고
구관	도서실	콘크리트조	411.20	4층
신관	교실	철근콘크리트조	900.00	6층 : 765 옥탑 : 135

라) 사업시행자주소 및 성명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9-2

성명 : 학교법인 배명양학원

이사장 서성환

<p>마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착수: 1981. 7. 1 ○ 준공: 1981.12.20 <p>바) 토지조서 및 위치도 제척평면도 및 공사시설제도면: 생략</p> <p>○서울특별시고시제 228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51 호(81.2.23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고시제 463 호(79.12.10)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	<p>1981. 6.24</p> <p>서울특별시</p> <p>가)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강동구가락동 489-1 외 10 필지</p> <p>나) 사업의종류 및 명칭</p> <p>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</p> <p>명칭: 서울석촌국민학교</p> <p>다) 사업의규모 및 면적</p> <p>대지면적: 11,570 평방미터</p> <p>규모: 교지 4,095 평방미터, 체육장 7,475㎡건축면적 1,638㎡ 건축면적(4층) 6,403.5평방미터</p> <p>라)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설명:</p> <p>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-16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</p> <p>마)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착수: 시행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○ 준공: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 <p>바) 위치및제척평면도면: 별첨(생략)</p> <p>사) 공사시설제도면: 별첨(생략)</p>
---	--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9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, 도로)시행차
명의변경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382 호(78.8.1)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515 호(78.10.4)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학교, 도로)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25 조 동법 시행령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(79.12.10)에 의거 이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6.25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: 서울시강서구 내발산동 산 9-2 의 8 필 및 동소내발산동 436-3- 산 58
- 2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, 도로): 우진여중고
- 3. 사업의규모및면적: 10,022.06 평 및 B: 12 M L: 225 M
- 4. 시행자 명의변경사항
 - 당초사업시행자: 충남당진군송악면기학리 395
학교법인 삼보학원이사장이홍수
 - 변경사업시행자: 충남당진군송악면가학리 395

- 학교법인 삼보학원이사장 김형진
- 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: 78.9.4 및 79.10.5
나. 준공예정일: 81.6.30
- 6. 사용할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: 별첨토지조서(생략)
- 7. 허가내용: 별첨허가도서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3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
시행허가일부변경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47 호(81.2.23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 도봉구월계동 807의 2 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한다.

1981.6.25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가. 변경사항

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
명 칭	규 격	주 량	단 위	비 고	명 칭	규 격	주 량	단 위	비 고
성 도	보통토사	3,722	㎡		성 도	보통토사	7,835	㎡	
석 축	= 1.0 m	207	m		석 축	= 2 m	165	m	
정 분					정 분		1	개 소	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1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 36 조 건설부고시 제 4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등 계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고시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6.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의 시행지: 성북구 정릉동 655-23 주변 가각도로
- 나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성북구 정릉동 655-23 주변 가각정비공사
- 다. 사업의 규모: 아스팔트 포장 A = 4.3 (기존도로 제포장 포함)
- 라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- 마. 사업의 접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부 61.8.16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다음
-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도시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: 다음

공사 토지 가 격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면적	산술평균치	사 정		소 운 자	
					단 가	금 액	주 소	성 명
1	정릉동 655-27	대	63㎡				증로구계동 147-35	손 중 휘
2	정릉동 655-21	대	119㎡				증로구이화동 9-12	오 상 민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32 호

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
처분계획인가

1.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
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공고
제 307 호 (78.7.19) 및 제 443.2-
700 호 (80.9.4) 로 공람한 바 있
는 옥석 2 지구내 일부구획 (1, 2, 12
구획)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
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에
의거 다음과 같이 동 구역 관리처
분계획을 인가함.

2. 고시내용

가. 관리처분계획

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
통보하여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건
축국 재개발 2 과와 관할구청 시민
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함

1981.6.26

서울특별시장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233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
지적승인고시

1. 서울시 고시 제 108 호 (81.4.7)
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시제
획시설 (학교, 도로) 용지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
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
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
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
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
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보인다.

1981.6.26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 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	치	면	적	비	고			
신	국	민	학	교	도봉구상계동 117ㄷ-1 일대	14,631 (4,426명)	수	락	국	
"	"	"	"	"	" 상문동 309-3 "	12,998 (3,932)	신	향	문	국
"	"	"	"	"	" 수유동 551-27 "	13,504 (4,085)	우	미	국	
"	"	"	"	"	" 공릉동 256-1 "	9,917 (3,000)	공	공	국	
"	"	"	"	"	" " 168,165 구획	11,769 (3,560)	하	계	국	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국민학교	도봉구방학동 307-4 일대	14,400 (4,356)	창도국
"	"	" 창동 683-27 "	11,524 (3,486)	
"	중학교	" 쌍문동 69-3 "	21,580 (6,528)	창동중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및 변경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1류	10	117	도봉구상제 1175-2	도봉구상제 1178-8	제지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3류	6	130	도봉구쌍문산 227	" 쌍문동산 314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"	"	90	" 공릉동 256-1	" 공릉동산 200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2류	8	120	" 공릉동 165 구획	" 168 구획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3류	6	142	" 방학 16-11	" 방학동 16-12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"	"	130	" 창동 663-1	" 창동 663-15	"
변경	"	"	6	130	"	"	
기정	"	"	"	134	" 쌍문동 186	" 쌍문 69-1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"	"	"	" 71-1	" 69-2	"
변경	"	"	"	"	"	"	
기정	"	"	"	69	" 69-2	" 69-1	"
변경	"	"	"	"	"	"	
신설	"	"	"	122	" 69-1	" 58	신설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○서울특별시고시제 23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(81.4.20) 및 동고시 제 169 호(81.5.9)로 학교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(79.12.10) 결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 6. 27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1. 사업시행지: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산 109-1 일부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: 명신여자상업전수학교</p> <p>3. 면적 및 규모: 8,443㎡</p> <p>4. 사업 시행자 주소 명칭: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34 명신여자상업전수학교 교장이 형 회</p> <p>5. 사업 시행기간: 1981. 6. 30 - 1982. 2. 28</p> <p>6. 허가번호: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</p> <p>7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</p>
---	---

소		지		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
지	지목	지	적	주	소
강서구신정동 109-1	임	13,884㎡ 중	8,443㎡	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34-2	이 형 회

<p>8. 공사설계도면: (도면생략)</p> <p>○서울특별시고시제 235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공고 제 360 호(64.7.3)로 환지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6.12.10)</p>	<p>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을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 6. 29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-1 외 2 필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한성학원교사증축

다. 사업시행규모

1) 시행면적 : 28,536.5㎡ 중 886.5㎡

2) 건축계획 : 건축면적 : 886.5㎡
연면적 : 4,867.40㎡
층수 : 지하 1층
지상 4층
구조 : 철근콘크리트 라멘조
용도 : 중, 고교교실

라. 시행자주소, 성명 : 북아현동 170-1 학교법인 한성학원
이사장 김 병 호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

2) 준공예정일 : 82.7.30

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사. 공식설계도서 : 별첨 (생략)
※도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아. 수용할 토지 : 없음

자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 한성학원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6 호

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수도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귀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6.29
서울특별시장

○ 시 설 조 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평)	비 고
신 설	수도	구로구시흥동 248 의 22 부근	100 (330㎡)	
"	"	" 산 91-1 부근	200 (660㎡)	
"	"	" 산 102-5 부근	100 (330㎡)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 호(74.8.12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1.6.29

서울특별시 장

- (1) 사업시행지: 서대문구 대현동 11-1 외 2 필지
- (2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: 이화여자대학교) - 명칭: 부기조성공사
- (3) 사업시행면적: 34,487.4 평방미터 (10,432 평)
- (4) 시행자주소, 성명: 서대문구 대현동 11-1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김영의
- (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(가) 착수년월일: 허가일로부터 15

일 이내

- (나) 준공예정일: 1981.12.31
- (6) 위치 및 계획면적: 별첨(도면생략)
- (7) 공사설계도면: 별첨(도면생략)
- (8) 수용할 토지: 없음
- (9) 토지의 소유자: 학교법인 이화학당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8 호

L.P.G 자동차충전소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(L.P.G 자동차 충전소)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6.30

서울특별시 장 박 영 수

서울특별시 고압가스제조(L.P.G 자동차충전소) 허가기준 및 절차

1. 신청기간: 1981.7.1 부터 1981.8.31 까지 (2개월간)

2. 신청절차

허가기준에 의거 정유회사와의 가

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 7 항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당시 시민과에 신청하여야 함.
 3. 허가업소수 : 3 개소
 4. 정유회사별 증설정수배정

정유회사별 배정수	유공	호유	경인	쌍용
증설충전소수	1	2		

5. 공급계약 체결요령
 정유회사는 본고시에 의하여 당시 증설배정 정수범위내에서 제 6 항의 허가기준 (다, 마호는 제외)에 적합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(공급계약은 배정 정수를 초과하거나 본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)

6. 허가기준
 가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6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 나. 정유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

- 다. 시설기준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5 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할것.
 - 저장탱크는 지하에,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것.
 - 수송장비로 탱크로리 (7.5 TON 급 이상) 1대 이상 확보할것.
 - 보안전력장치로 발전기 (1Kw)

- 1대 이상 확보할것.
- 시설부지 1,000 ㎡ 이상 관(후생)실 150 ㎡ 이상 확보할것.

라. 보안거리유지
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 외면으로부터 법정 보안거리를 유지할것 (다만, 인접대지에 보안물이 없는 경우는 인접대지와외 경계선을 보안물로 간주한다)

마. 법정 안전관리자를 채용할것.

바. 지역
 ○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법령상 설치 가능지역이며,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일것.

- 광화문 도로 원표기점 환경 5 Km 외곽지역일것.
- 충전소 상호간 직선거리 1 Km 이상 유지할것.
- 학교와의 거리 200 m 이상 유지할것.

사. 기타
 ○ 시설 및 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허가후 2년내에는 타인에게 양도불가함.
 ○ 부지 경계로부터 50 m 이내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것.

7. 제출서류
 가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3 조에 규정된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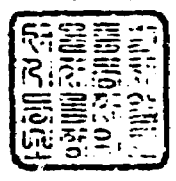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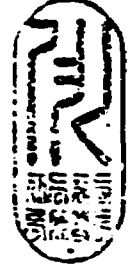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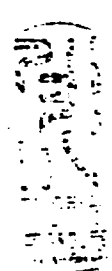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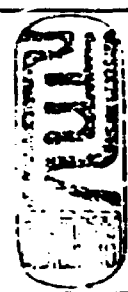
<p>나. 도시계획 확인증명서, 토지대장등본 및 시설예정지를 표시한 1/5,000 지도 각 1부</p> <p>다. 부지경계로부터 50 m 이내 건물주의 동의서</p> <p>라.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,000 원</p> <p>8. 허가신청처리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되어 업소간 거리 유지등이 경합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9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업국 도시가스과 (725-6849) 에 문의하기 바람.</p>	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9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결정및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6.30 서울특별시 장</p>
--	--


○ 시 설 조 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운동장	성동구 능동산 3-38 부근	24,463 ㎡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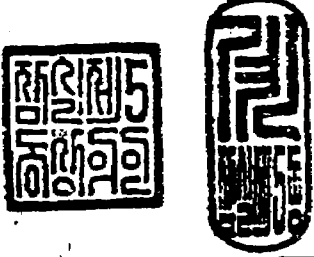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0 호</p> <p>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인가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(77.4.27) 에 의거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인 가된 광화문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16조 규정에 의</p>	<p>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6.30 서울특별시 장</p> <p>가. 변경내용</p> <p>1) 사업시행기간</p> <p>당초: 77.4.27 - 81.6.30</p> <p>변경: 77.4.27 - 81.12.31</p> <p>사유: 주차장용지판지지연</p>
--	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고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동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. 6. . 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동 인 명 :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 사업소장의인및제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1981.6.25</p> <p>3. 공인의인명 : 다음</p>	<p>인 영</p>  
<p>인 영</p>   <p>공인명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의인및제인(구)</p>	<p>공인명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의인및제인(신)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1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. 6. . 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동 인 명 : 동대문구청장의인및제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1981. 7. 1</p> <p>3. 공인의인명 : 다음</p> <p>인 영</p>   <p>공인명 동대문구청장직인및제인</p>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2 호</p> <p>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용 아페와 같이 신조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해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1. 6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 인 명 :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 회계도봉구분임지출원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81.7.1</p> <p>3. 공인의인명 : 다음</p>	<p>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981.6.18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 원 명 : 어린이대공원</p> <p>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산 3-8</p> <p>3. 점용목적 : 수영장용 지하수개발</p> <p>4. 시설물 규모</p> <p> 맨홀 1개 (직경 1미터)</p> <p> 파이프매설 : 파이프 (D=3" L=120m)</p> <p> 깊이:지하 1.5m이상</p> <p>5. 허가기간 : 1981.6.18 - 1984.6.17 (3년)</p> <p>6. 점 용 자 : 재단법인 옥영재단 이사장 최세경</p>
<p>인 명</p>	
<p>공인명</p>	<p>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도봉구분임지출원</p>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3 호</p> <p>도시공원점용허가</p> <p>서울특별시 도시공원법 제6조</p>	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6 호</p> <p>동청사위치변경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.</p> <p>1981. 6. 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
○ 위치 변경 내용			
동사무소명	변 경 내 용		이전 일자
	변 경 전	변 경 후	
상계계 4 동사무소	도봉구상계동 68-50	도봉구상계동산 161-7	81.7.6
독산계 4 동사무소	구로구독산동 319-1	구로구독산동 109-2	81.7.1

<p>○ 강동구청 공고제 38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실 5 동장 공인용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. 6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</p> <p>1. 공인 개각사용 개시일자 : 1981.7.1</p> <p>2. 개각된 공인명 : 잠실 5 동장의 직인 및 제인</p> <p>3. 공인 개각인명 : 다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사 령</p> <p>○ 1981.6.22 발령호수 24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운수 1 과 배 병 호 지방서기관</p> <p>서기관에 임함 교통국운수 1 과장제 포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운수 1 과 김 완 규 서 기 관</p> <p>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 봉 영</p> <p>○ 1981.6.24 발령호수 236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부 지 과 강 행 도 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. (81.6.24-82.6.23)</p>	
인 영		<p>공인명 잠실 5 동장의 직인 및 제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

◎ 1981.6.27 발령호수 239

민 방 위 과
지방행정사무관 전 귀 권
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항 3 호의
규정에 의거 유직을 명함.

업 무 과 박 성 중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항 3 호의
규정에 의거 유직을 명함.

영 동 포 구 사 회 과 김 충 만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항 3 호의
규정에 의거 유직을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 1981.6.29 발령호수 237

충 남 부 여 군 조 성 대
지방행정주사

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
마포구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 1981.7.1 발령호수 238

동대문구면목 2 동 김 동 석
지방행정서기보

전라남도 전출을 명함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 1981.7.1 발령호수 234

제 1 부 시 장 김 찬 회
관 리 관

인천직할시장에 임함.

발령호수 235

정무장관실 이 상 연
제 1 부 관 (1급장당)

관리관에 임함.
제 1 부 시장에 포함.

대 문 방

◎ 1981.7.1

정무장관제 1 실 정 해 용
문 건 원

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
지방문건원에 임함.
총무과 근무를 명함.

정무장관제 1 실 이 미 경
탁 자 원

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
지방탁자원에 임함.
총무과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